2025년 식품분석지원 참여기업 모집 안내

성남소공인집적지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는 관내 식품제조 소공인 기업 대상으로 품질안전,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분석 결과 및 상담을 제공하는 식품분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모집기간 : 2025. 2월 ~ 11월

○ 지원대상 : 성남시에 본사를 둔 식품제조 소공인(상시근로자10인 미만) / 업종코드: C10, C11

○ 지원규모 : 연 60개사 (매월 9개사 내외, 한 업체당 2개 시료)

※ 동일품목·분석항목지원 3회 초과일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음

○ 지원내용

• 식품시험분석 (이화학 분석, HACCP 유효성 시험 등 참고용 미생물 시험, 품질측정 및 결과상담)

구 분	내 용
영양성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식이섬유
무기성분	칼슘, 철, 칼륨
중금속	수은, 비소, 납, 카드뮴
미생물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바실러스 세레우스, 장염 비브리오,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진균수, 유산균수
품질측정	염도, 색도, 점도, 물성, pH, 당도, 산도(Acidity)

• 제조시설 환경모니터링

구 분	내 용
공중낙하균	기업방문을 통한 바닥으로 낙하하는 미생물로 제조시설 오염도 파악 (시험항목 – 세균수, 대장균(군), 진균)
표면오염도	기업 내 구비된 제조설비, 조리기구 등 표면의 미생물 오염도 확인 (시험항목 – 세균수, 대장균(군), 진균)

○ 시험분석 소요기간

- 영양성분, 무기성분, 중금속: 최대 15일 / 미생물시험, 기능성성분, 품질측정: 최대 10일

・시험분석기간은 시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시험결과서를 발부한 날까지로 한다.

・시험분석기간의 산정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검사소요 일(월~금)으로 산정한다.

※ 시험·분석 항목의 수에 따라 소요기간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외

- 사업신청 대상이 아닌 기업
- 제조업이 아닌 단순 유통 서비스업인 경우
-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나 본사가 타지역에 있는 기업 / 기업 부설 연구소만 소재한 기업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허위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연중상시 (매월 넷째주 월요일 익월분 선착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시험분석의뢰서(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각 1부

○ 신청방법 : 성남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안내 : 시료접수일 미준수시 분석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분석을 위해 시료접수일을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주 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57번길 8, 301호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 담 당 자 : 성남소공인집적지구 식품연구개발지원센터 조은지, 박은선 연구원

○ 전 화 : 031-750-2890~1

2025년 7월 21일

성남산업진흥원장

[검체수거량]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가공식품	250 g (ml) (다만, 캡슐류는 200g)	•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 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 이어야 한다. •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 미생물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 (n)은 검사하기 위한 시료의 수로 (n=5)의 규격 항목이 있는 제품은 6개(미생물시험용 5개, 그밖에 이화학분석용 1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유탕처리식품	250 g	
자연산물 •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채소류 • 과실류 • 수산물	250 g	

※ HACCP유효성시험을 위한 미생물 시험의 경우에는 의뢰서 확인 후 검체수거량에 대한 개별 안내예정

※ 의뢰서에는 CCP 전후로 검체량/포장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만 기입